

김기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
전화 010 8*****
keechang@fastmail.fm

(우)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서병조 단장님 귀하

제목: 공인인증기관 관련

저는 2007.2.15. 공인인증 업무에 대한 기획,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 김태완 서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석래 팀장에 대한 심사(직무감찰)청구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공인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는 전자서명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정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 부서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금융결제원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입자 설비)를 법령이 정한 심사나 확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배포하고 있고,
- 전자서명법 제7조에 규정된 보편적 의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일부 가입자에게만 리눅스, 매킨토시 등에서도 이용가능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나머지 가입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인증업무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귀 부서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거듭 갱신지정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윈도우즈/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이용환경에서도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그동안 반복하여 내세워 왔으나, 이점은 외국 사례(미국 육군, 캐나다 통계청, 덴마크, 스페인)들을 보더라도 아무런 근

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금융결제원 스스로도 2006.12.에 이미 윈도우즈, 매킨토시, 리눅스에서 모두 작동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체적으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보안업체들은 이미 2005.8.에 운영체제/웹브라우저에 구매받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누가 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이었고, 최근(2007.4.1)에는 또다른 국내 전문인력이 기술중립적인 가입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그 소스코드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ms-class-action.net/class/>).¹

기술중립적이고 범용성 있는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과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구 한미은행 등은 다양한 운영체제/웹브라우저를 아무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 애플릿 형태의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 서버측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웹브라우저가 무엇인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의 서버측 솔루션으로 인증/검증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유지, 보수 업무 부담도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실사, 웹서버 측에 경미하고 사소한 수준의 추가 비용이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웹서버의 문제일 뿐, 인증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금도 웹서버들에 대한 어떠한 기술지원이나 업무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증기관은 웹서버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약상, 법률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융결제원이 은행 등 전자거래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독립성도 없다는 점입니다. 인증업무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전자거래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가 바로 공인인증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i)은행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된 단체이며, ii) 금융결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이 전액 제공하며, iii)금융결원의 모든 의사결정은 은행의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진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인 은행들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

¹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서명용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http://lawlec.korea.ac.kr/sign/src/>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아무런 제도적(organisational) 또는 업무수행관련(operational)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거듭 지정, 갱신지정해온 귀 부서의 판단은 적법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금융결제원이 (그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가입자 설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심사와 확인을 받을 것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근거: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지침 제24조; 금결원 외의 나머지 공인인증기관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가입자 설비에 대하여 KISA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금결원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이미 개발이 완료된 범용성 있는 가입자 설비의 제공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근거: 법 제7조)
3. 금융결제원이 적어도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으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직상, 업무수행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근거: 시행령 제4조)

이 서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민원임을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4.7.

김기창 드림

첨부: 심사청구서 - 보충